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 미 랑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최 정 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본 연구는 학교라는 특별보호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하였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99건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 269건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하여 남자 피해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가 없는 10대의 학생이었으며, 피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 대부분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 학생으로,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범행은 봄에 고등학교 안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 직업이 있고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대부분 학교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위계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범행은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일반 피해자 대상 성범죄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학교 성범죄, 범행 수법, 발생 특성, 아동 성범죄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 02-2077-7832, E-mail : jsirispark@hotmail.com

학교에서는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는가? 지금까지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는 이유로 학습이외의 다른 기능과 작용들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학교에서 발생하였던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접했고, 학교가 우리의 믿음보다 안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보호가 강화되는 곳이면서도 모순적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곳이 되었다. 결국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과 보호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의 법감정 수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법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도 발견된다.¹⁾ 그러나, 학교가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의식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감스럽게도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공개하고 대책을 논할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최근 들어서 다행히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범죄행위는 조사하고 현황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에서 어떠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조사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았다. 본 연구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만이 아니기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학교가 자발적으로 공개해 오지 않았던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그 처벌 권한이 학교 경계를 넘어서 형사사법기관으로 이관된, 공식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주목을 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이들이 갖는 상대적 취약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취약 집단 속에서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서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단순히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관련 분석을 넘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을 경우 학교 성범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은 물론이거니와 범행 수법 및 발생 상황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라는 세 가지의 중복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경험한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

1)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시설에는 아동·청소년이 교육받는 학교는 물론 의료시설, 활동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 18조에서 “제 34조 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실시된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특별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보고 있다(양형위원회, 2014).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의 책임이 크고,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인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 연구는 물론, 아동 성범죄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분석하여 가해, 피해, 그리고 상황적 맥락들을 일반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

아동 성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하여 실질적 통계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들이 성적 피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비밀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Belknap, 2007). Rush(1980)는 아동이 범죄 피해에 대해 비밀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며, 잊기를 원하고 피해 경험으로 비난받거나 자신의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Williams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치료를 받은 성학대 경험자 13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담결과,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피해아동이 기억을 억압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제 발생 사건보다 적게 드러나고 있으며, 실제 통계를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Belknap, 2007).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 인지 기능 장애, 공격성 등의 사건 후유증을 겪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박지선 · 이연호, 2011; Diehl & Prout, 2002; Einbender & Friedrich, 1989; Finkelhor, 1990). 또

한, 아동 성학대를 겪었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낙담, 자아파괴, 불안, 소외감, 치욕,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공포와 불신 호소(Belknap, 2007; Browne & Finkelhor, 1986; Murphy et al., 1988; Russell, 1984)와 더불어, 약물과 알코올 남용, 성기능 장애 또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한다(Belknap, 2007; Browne & Finkelhor, 1986).

청소년기에 성학대를 당한 사람보다 13세 이전에 성학대를 당한 사람이 위와 같은 현상에 더욱 부합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으며, 낮은 자존심과 약물의존성과도 성학대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Belknap, 2007; Siegel & Williams, 2003).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 연구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별 비율은 여자 아동이 70%를 차지한다는 결과(Belknap, 2007; Finkelhor & Baron, 1986), 남자 아동보다 2.5-3배 높다는 결과(Belknap, 2007; Putnam, 2003), 85%가 여자아동이라는 결과(Belknap, 2007; Heger, Ticson, Velasquez, & Bernier, 2002) 등을 통해 여자 아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jaden and Thoennes(1998)는 강간당한 여성들 중 22%가 12세 미만에 처음 강간을 당했고, 32%가 12-17세 사이, 29%가 18-24세 사이, 17%가 25세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Wyatt et al. (1993)은 신체접촉이 있는 성학대로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45%가 아동기에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Peters, Wyatt, and Finkelhor(1986)는 아동 성학대가 널리 퍼져 있고 높은 비율

인 점을 지적한다.

홍영오(2008)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범죄 피해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수준이 높으며, 생활만족도는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불안, 공포, 수치심 등의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높은 자책감, 대인 관계에 있어 불신감, 학업 능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Diehl & Prout, 2002; Finkelhor, 1990). 이러한 증상들은 장기적으로 자살 충동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행위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Einbender & Friedrich, 1989; Terry, 2006).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전영실 외(2010)는 한국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태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일반 성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영실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특성으로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과 강간이 강제추행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꼽았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반복적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피해 인지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강간으로의 피해 전이가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청소년시기의 성적 호기심의 증가를 근거 이유로 설명하였다.

특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개인이 갖는 특성은 장애를 가진 성인 성폭력 실태와 큰 차이가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지적장애 3급인 경우가 절반 이상임을 보고하였다(전영실 외 2010).

또한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비율이 높아 취약성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부모의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 아동이 입은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가정환경에 속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전영실 외 2010). 사건 후, 성폭력 지원시설로 오게 된 기간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하는 기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지 기간이 한 달 이내가 34.2%로 비교적 가장 많았으나, 6개월이 넘는 경우나 6달 이내의 경우도 각각 27.8%, 19%로 조기 대처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시설로 오게 된 기간도 한 달 이내가 38%로 많았고, 6달을 넘기거나 이내의 경우가 각각 22.8%였다. 따라서 성폭력 인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사람으로는 부모 다음으로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많았고, 가족들이 피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절반이 넘게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나 피해자를 혼내고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구하는 경우도 30%이상 해당하였다(전영실 외 2010).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주변사람에게 들은 경우, 직접 목격, 경찰에게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았고, 직접 피해자에게 들은 경우가 10%밖에 되지 않았다(전영실 외 2010),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이 다시 드러났다.

한편,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의 특성은 기존의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적인 성폭력이 대부분 단독범행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25% 가량의 사건이

공범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외 2010). 또한 가해자 연령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40-50대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전영실 외 2010).

전영실 외(2010)의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이 겪는 장애의 특수성을 보여준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보호 장소에서 입었던 피해는 어떠한지, 가해자 및 범행 패턴은 어떠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 연구는 특별보호장소 중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하여, 장애인 피해자와 일반인 피해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두 집단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며, 셋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용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핵심적 분석도구는 판결문이다. 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신고율이 낮은 문제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학교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이종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발

생한 성범죄를 공식 문서화하는 시스템과 공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처벌 받은 사건을 위주로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최종 판결이 아닌 신고되거나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수집된 샘플 사이즈 변경 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제한으로 인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실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분석하도록 한다.²⁾ 2014년 4월 4일~4월 26일까지 법원 및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건들의 전수를 조사하였다. 현재의 법원 및 검찰청의 사건통계 시스템이 발생장소에 따라 “학교”에 대한 판결문 분류가 불가능한 관계로, 각 범죄군 별 관련 키워드 검색을 “학교”로 하여, 각 범죄군 별로 학교가 포함된 사건들

2) 보통 공식범죄분석이라 함은 경찰 통계 및 검찰 통계를 활용하나, 본 연구에서 판결문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찰 통계 시스템은 현재 범행발생장소가 “학교”인 경우 통계 원표상으로는 통계 입력이 “학교”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 정확한 입력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경우 이후 형사사법의 절차를 거치면서 걸러지는 과정들이 누락될 수 있고 무죄판결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장애일 경우에는 무죄판결의 비율이 높은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하여 경찰의 공식통계만으로는 취약한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 증언의 신빙성의 이유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사례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사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을 수집하였다. “학교” 및 “학교주변”의 키워드로 검색된 판결문 수는 1464건이었고, 이는 절도, 약취유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기타 강력 범죄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앞서 단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된 판결문을 다시 성범죄 항목으로 세부 분류하였고, 총 841건의 성범죄 사건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결문은 “학교 및 학교주변”이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수집된 성범죄 판결문인 까닭에, 발생장소가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중 학력,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의 학교 선후배 등의 실질적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판결문 속에 포함되어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이다. 그리하여 성범죄 발생장소가 직접적으로 “학교 및 학교 주변”에 해당하는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이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별 작업은 반분법으로 이루어졌다. 각 연구자가 1차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차 교차 검토를 통하여, 두 연구자에 의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판단이 일치하는 판결문만 최종 선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총 133건의 판결문이 최종 수집되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판결문은 성범죄군에 속하는 사건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들이 수집되었다. 최종 선별된 사건들은 각 범죄군 별로 코드북 제작을 통해 정량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판결문 속에는 하나의 사건 정보만이 아닌 한 명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수의 범행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들 역시도 범행 장소가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기 다른 사건으로 계산되어 분석 가능한 사건 수는 수집된 판결문 수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즉, 성

표 1. 수집된 판결문 정보와 분석된 사건 수

| 학교 | | 분류과정 | N |
|--------------|-----|-------------|-----|
| 발생 범죄 판결문 | 성폭력 | 수집된 판결문 | 841 |
| | | 최종 분석가능 판결문 | 133 |
| 총계 | | 최종 분석 사건 수 | 368 |

폭력 피의자 1명이 동일 학교에서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 5건이 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5건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각 사건 정보를 코딩하여 입력하였다. 그 결과로 성폭력은 총 368건의 사건이 수집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범죄 판결문 수와 분석사건 수에 대한 정보는 표 1을 참고하도록 한다. 총 368건의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연구 절차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장애 유무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살피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류하여 범행 및 재판 정보, 가해자의 인적사항, 전과기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발생장소, 범죄 발생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총 368건의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가 269명(73.1%)을 차지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94명(25.5%), 신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5명(1.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경우 269건과 장애가 있는 경우(신체 및 지적 장애 포함) 총 99건을 나누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는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t-test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 과

가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우선 장애 여부에 따른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우선 성별에 있어,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모두 가해자가 남성인 반면,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94.9%, 여성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에 있어서는,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학생인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극소수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가해자의 대부분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나, 장애인 피해자 대상 사건보다는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해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일반인 피해자 대상 사건 $M = 48.9$, $SD = 16.7$; 장애인 피해자 대상 사건 $M = 24.8$, $SD = 15.9$; $t = 12.5$, $df = 366$, $p = 0.000$). 즉, 일반인 피해자 대상 사건의 가해자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일반인 피해자 대상 사건의 경우 가해자 연령이 최소 13세부터 최고 77세까지로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77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명(26%), 40대 37명(13.7%), 20대가 34명(12.7%), 30대 25명(9.3%), 10대 20명(7.4%), 70대 6명(2.2%)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장애인 피해자 대상 사건의 경우 최소 16세부터 최고 61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이 가운데 10대가 74명(7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9명(9.1%), 60대 8명(8.1%), 40대가 4명(4%), 30대 3명(3%), 20대 1명(1.1%)의 순으로 많았다.

표 2. 가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 특성 | | 일반인 피해자 | | 장애인 피해자 | | χ^2 | p |
|----|----|---------|-------|---------|-------|----------|----------|
| 성별 | 남자 | 269 | 100% | 94 | 94.9% | 13.8 | 0.000*** |
| | 여자 | 0 | 0% | 5 | 5.1% | | |
| 직업 | 있음 | 219 | 81.4% | 24 | 24.2% | 186.2 | 0.000*** |
| | 없음 | 34 | 12.6% | 1 | 1% | | |
| | 학생 | 16 | 5.9% | 74 | 74.7% | | |
| 전과 | 있음 | 21 | 7.8% | 1 | 1.0% | 5.95 | 0.015* |
| | 없음 | 248 | 92.2% | 98 | 99.0% | | |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다음으로 장애 여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우선 성별에 있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

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자 장애인일 경우 일반 여성이 갖는 취약성과 비등하거나 혹은 더욱 열악한 피해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대부분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이었으나, 일반 피해자의 경우 타학교 학생이거나 학교직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표 3.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 특성 | 일반인 피해자 | 장애인 피해자 | χ^2 | p | |
|--------------|----------|-----------|-----------|-------|----------|
| 성별 | 남자 | 13 4.8% | 76 76.8% | 204.2 | 0.000*** |
| | 여자 | 256 95.2% | 23 23.2% | | |
| 발생 학교 학생 여부 | 해당학교학생 | 205 76.2% | 89 89.9% | 11.3 | 0.023* |
| | 타학교 학생 | 22 8.2% | 2 2.0% | | |
| | 외부인 | 13 4.8% | 5 5.1% | | |
| | 미상 | 22 8.2% | 3 3.0% | | |
| | 학교직원 | 7 2.6% | 0 0.0% | | |
| 피해자 상태 | 등교중 | 2 0.7% | 1 1.0% | 23.2 | 0.000*** |
| | 학교일과중 | 172 63.9% | 87 87.9% | | |
| | 하교중 | 7 2.6% | 1 1.0% | | |
| | 하교후 | 26 9.7% | 0 0.0% | | |
| | 휴일 | 2 0.7% | 1 1.0% | | |
| 학교 일과중 동행 여부 | 혼자 | 128 74.4% | 87 100.0% | 26.8 | 0.000*** |
| | 동행인 존재 | 22 12.8% | 0 0.0% | | |
| | 미상 | 22 12.8% | 0 0.0% | | |
| 가-피 관계 | 피해자 지인 | 16 5.9% | 78 78.8% | 210.9 | 0.000*** |
| | 초면 | 69 25.7% | 4 4.0% | | |
| | 학교직원 | 172 63.9% | 11 11.1% | | |
| | 채팅사이트 | 7 2.6% | 2 2.0% | | |
| | 안면 있는 정도 | 3 1.1% | 1 1.0% | | |
| | 이웃 | 2 0.7% | 3 3.0% | | |

* p<.05, ** p<.01, *** p<.001

피해자의 대부분이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이었으나,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하교 중이거나 하교 후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이었던 피해자들만 놓고 보았을 때, 장애인 피해자는 모두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역시 혼자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직원, 초면인 경우의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학교 직원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면인 경우, 지인인 경우의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일반인 피해자 $M = 12.4$, $SD = 7.33$; 장애인 피해자 $M = 18.3$, $SD = 3.73$; $t = 7.64$, $df = 344$, $p = 0.000$). 즉, 장애인 피해자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최소 7세부터 최고 41세까지로 분포가 나타났으며, 최빈치(Mode)는 18, 중앙값(Median) 역시 1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가 86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8명(8.1%), 10세 미만이 3명(3%), 30대 1명(1%), 40대 1명(1%)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최소 6세부터 최고 56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최빈치(Mode)는 7, 중앙값(Median)은 1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가 146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세 미만이 87명(35.2%), 30대 6명(2.5%), 40대 5명(2%), 20대가 2명(0.8%), 50대 1명(0.4%)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장애인 피해자의 평균 피해 연령이 높

은 이유는, 일반인 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가 성숙된 이후에야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신체발달이 진행된 이후에야 범죄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피해자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일반인 피해자 $M = 1.90$, $SD = 3.63$; 장애인 피해자 $M = 1.01$, $SD = 0.10$; $t = 2.44$, $df = 364$, $p = 0.015$). 즉, 일반인 피해자의 평균 숫자가 더 많았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1명이 98건(9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은 단 1건(1%)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범죄 범행이 단독피해가 많은 것과 비교하여,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공동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숫자가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신체적, 상황적 취약성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반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단독 피해가 대부분인 이유는,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이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범행 수법에서의 차이

다음으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범행 수법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우선 피해자 유인 방법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유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대로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표 4. 범행 수법에서의 차이

| 범행 특성 | | 일반인 피해자 | | 장애인 피해자 | | χ^2 | P |
|--------------|---------------|---------|-------|---------|--------|----------|----------|
| 유인 방법 | 위계위력사용 | 128 | 47.6% | 10 | 10.1% | 145.4 | 0.000*** |
| | 물질적 환심유도 | 8 | 3.0% | 0 | 0.0% | | |
| | 방문자행세 | 2 | 0.7% | 0 | 0.0% | | |
| | 단순질문 | 8 | 3.0% | 1 | 1.0% | | |
| | 질문(길문거나 도움요청) | 6 | 2.2% | 0 | 0.0% | | |
| | 흥기로 위협 | 1 | 0.4% | 0 | 0.0% | | |
| | 애정/칭찬 | 40 | 14.9% | 80 | 80.8% | | |
| | 놀이 | 5 | 1.9% | 2 | 2.0% | | |
| | 폭력 | 4 | 1.5% | 0 | 0.0% | | |
| | 기타 | 67 | 24.9% | 6 | 6.1% | | |
| 계획성 | 우발적 | 81 | 30.1% | 87 | 87.9% | 98.08 | 0.000*** |
| | 계획적 | 185 | 68.8% | 11 | 11.1% | | |
| | 미상 | 3 | 1.1% | 1 | 1.0% | | |
| 성기 이외 성접촉 | 해당 없음 | 106 | 39.4% | 6 | 6.1% | 38.00 | 0.000*** |
| | 해당 | 163 | 60.6% | 93 | 93.9% | | |
| 피해자 성기접촉 | 해당 없음 | 164 | 61.0% | 19 | 19.2% | 50.52 | 0.000*** |
| | 해당 | 105 | 39.0% | 80 | 80.8% | | |
| 가해자 성기접촉 | 해당 없음 | 251 | 93.3% | 22 | 22.2% | 191.0 | 0.000*** |
| | 해당 | 18 | 6.7% | 77 | 77.8% | | |
| 강제추행 | 해당 없음 | 50 | 18.6% | 6 | 6.1% | 8.80 | 0.003** |
| | 해당 | 219 | 81.4% | 93 | 93.9% | | |
| 카메라 촬영 | 해당 없음 | 239 | 88.8% | 99 | 100.0% | 12.02 | 0.001** |
| | 해당 | 30 | 11.2% | 0 | 0.0% | | |
| 범행 후 협박 | 해당없음 | 247 | 91.8% | 99 | 100.0% | 8.61 | 0.003** |
| | 해당 | 22 | 8.2% | 0 | 0.0% | |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는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유인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범행의 계획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드러났다. 계획성의 판단 자체가 판결문에 기록된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이 갖는 주관적 기준에 대한 문제를 본 논문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높았

다는 것은 이들이 갖는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이 굳이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가해자의 우발적 동기로도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이들의 취약성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적 접촉에 있어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 피해자와는 달리 성기 이외의 성접촉이나 피해자 및 가해자 성기 접촉, 강제추행 모두에 있어서 해당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해자가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범행 후 협박하는 경우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약 10건에 한 건 내외로 발생하였다.

더불어, 범행횟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일반인 피해자 $M = 7.81$, $SD = 11.8$; 장애인 피해자 $M = 51.2$, $SD = 30.2$; $t = 19.87$, $df = 366$, $p = 0.000$). 즉,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범행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한편, 범행 지속 기간(개월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일반인

피해자 $M = 5.39$, $SD = 5.69$; 장애인 피해자 $M = 2.96$, $SD = 6.55$; $t = 3.04$, $df = 238$, $p = 0.003$). 이번에는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범행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 직업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 의한 범행이 많았고, 특히 동일한 장소에 머무르는 관계(학교 교직원 등)에 의한 범행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속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여겨진다.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

이번에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범행 발생 특성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우선 발생 학교와 관련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봄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계절

표 5.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

| | | 일반인 피해자 | | 장애인 피해자 | | χ^2 | p |
|----------|------|---------|-------|---------|-------|----------|----------|
| 학교 등급 | 유치원 | 1 | 0.4% | 0 | 0.0% | | |
| | 초등학교 | 189 | 70.3% | 10 | 10.1% | | |
| | 중학교 | 46 | 17.1% | 2 | 2.0% | | |
| | 고등학교 | 33 | 12.3% | 81 | 81.8% | | |
| | 특수학교 | 0 | 0.0% | 6 | 6.1% | | |
| 계절 | 봄 | 85 | 31.6% | 83 | 83.8% | 81.26 | 0.000*** |
| | 여름 | 92 | 34.2% | 5 | 5.1% | | |
| | 가을 | 68 | 25.3% | 6 | 6.1% | | |
| | 겨울 | 24 | 8.9% | 5 | 5.1% | | |

표 5.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

(계속)

| | | 일반인 피해자 | | 장애인 피해자 | | χ^2 | p |
|---------------|-------------|---------|-------|---------|-------|----------|----------|
| 장소 | 학교 내 | 236 | 87.7% | 96 | 97.0% | 6.99 | 0.008** |
| | 학교 주변 | 33 | 12.3% | 3 | 3.0% | | |
| 학교 내 장소 | 교실 | 36 | 15.3% | 5 | 5.2% | 142.3 | 0.000*** |
| | 교무실 | 10 | 4.2% | 0 | 0.0% | | |
| | 교장실 | 7 | 3.0% | 0 | 0.0% | | |
| | 행정실 | 3 | 1.3% | 0 | 0.0% | | |
| | 운동장 | 70 | 29.7% | 1 | 1.0% | | |
| | 기숙사 | 14 | 5.9% | 0 | 0.0% | | |
| | 화장실 | 27 | 11.4% | 71 | 74.0% | | |
| | 체육관 | 16 | 6.8% | 3 | 3.1% | | |
| | 복도, 계단 등 통로 | 17 | 7.2% | 1 | 1.0% | | |
| | 기타 | 36 | 15.3% | 15 | 15.6% | | |
| 경합 여부 | 해당 없음 | 232 | 86.2% | 98 | 99.0% | 12.69 | 0.000*** |
| | 경합 | 37 | 13.8% | 1 | 1.0% | | |

* p<.05, ** p<.01, *** p<.001

에 있어 발생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범행 장소의 대부분이 학교 안이었으나, 일반 피해자의 경우 학교 주변이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범행 장소가 학교 내부였던 피해자들만 놓고 보았을 때, 장애인 피해자는 대부분 화장실에서 피해를 입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실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사건에서 경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반 피해자의 경우 폭행, 강도, 절도 등 경합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의 위험성을 지각하고,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던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공식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연령의 취약성에 덧붙여 장애의 취약성을 더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범죄 관련 경험적 연구와의 차별성 및 의의를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3년 사이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368건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경우 269건과 장애가 있는 경우 99건 사이의 차이점을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처 방안 및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가해자의 특성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이 일반인 대상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로 학생이며, 대부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5-60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나이가 더 많았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성범죄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취약성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1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10대 뿐만 아니라 10세 미만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을 놓고서는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성범죄에 노출되어 왔는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즉, 전영실 외(2010)의 경우, 성폭력 인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폭력 자체의 인지가 매우 늦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범죄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첫

피해 연령과 범행의 지속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다양하게 나타나 일반인 피해자의 평균 숫자가 더 많았다. 한편, 피해자의 대부분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으로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이었으나, 일반 피해자의 경우 타학교 학생이거나 학교직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피해자가 하교 중이거나 하교 후인 경우가 장애인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장애인 피해자는 모두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났다. 이전 전영실 외(2010)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경우가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홀로 방치됨으로써 취약성이 더해지는 문제와 더불어 신고와 발각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어린 연령대의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동행하는 자가 있어도 여전히 취약성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에 있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지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학교 직원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유인 방법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해자가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유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 많으며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성기 이외

의 성접촉이나 피해자 및 가해자 성기 접촉, 강제추행 모두에 있어서 해당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반면, 가해자가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범행 후 협박하는 경우는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범행 횟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범행 지속 기간(개월 수)에 있어서는 일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범행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범행 발생 특성에 있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주로 봄에 학교 안, 특히 화장실에서 범행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계절 발생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장소가 학교 주변이었던 경우, 경합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듯, 학교 공간에서 장애인이 입은 성적 피해를 일반인의 피해와 비교하여 살펴본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취약성에 따라 가해자 및 가해 패턴은 달라진다.

둘째,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패턴이 학기 중에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 역시 학기 중 그리고 학교 일과 중에 대부분 발생한다. 특히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학기 초 취약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상대적 발생 건수가 적다. 그런데 유사한 연령대의 학생에 의한 피해가 많고 성폭력 수준이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들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발각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의 경우 특히 남자 피해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는 Bass(1983)의 주장처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모두 기본적으로 폭력과 권력, 지배에 따른 행동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전에 실시된 전영실 외(2010)의 정책적 제안과 유사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인지는 물론 성교육의 필요성을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성범죄는 외부인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내부 학생 및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도 높게 보고되므로, 내외부인의 감시 제도 및 출입통제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피해자가 성범죄 발생 학교의 학생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성인 피해자(학교 직원이나 외부인 등)의 사례도 적으나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보호기관인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내외부인의 감시 제도 및 출입통제 등의 정책을 통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의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보호

시설에서 학교 교직원이라는 보호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의 양상을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공식적인 통계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던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장애인 피해자와 일반인 피해자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방법론을 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공식통계 집계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키워드 분석에 의한 판결문 분석에 의존하였다. 둘째, 판결문 분석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종 재판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어려웠다. 셋째, 학교라는 공간과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의 까다로운 특수상황이 결합된 사건을 제한적 환경에서 수집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추론 통계를 통한 차이를 언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더욱 장기간의 사건 수집이 용이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더욱 정확한 그림을 그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성범죄 발생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함으로써 차별적인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대한 실용적인 함의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박지선 · 이연호 (2011).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5(2), 81-106.
- 양형위원회 (2014). 양형기준.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2010). 장애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2008).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ss, E. (1983). Introduction: In the Truth Itself, There Is Healing. pp. 23-61 I Never Told Anyone, edited by E. Bass and L. Thornton. New York: Harper and Row.
- Belknap, J.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Thomson/Wadsworth.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66-77.
- Diehl, A. S. & Prout, M. F. (2002).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hild sexual abuse on self-efficac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 262-265.
- Einbender, A. J. & Friedrich, W. N. (1989).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behavior of

-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7, 155-157.
- Finkelhor, D. (1990). Early and long-term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an updat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1, 325-330.
- Finkelhor, D. & Baron. (1986). High Risk Children. pp. 60-88 in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edited by D. Finkelhor. Beverly Hills, CA: Sage.
- Heger, A., Ticson, L., Velasquez. & Bernier, R. (2002). Children Referred for Possible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6, 645-659.
- Murphy, S. M., Kilpatrick, D. G., Amick-McMullan, A., Veronen, L. J., Paduhovich, J., Best, C. L., Veilleponteaux, L. A. & Saunders, B. E. (1988).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 55-79.
- Peters, S, D., Wyatt, G. E. & Finkelhor, D. (1986). Prevalence. pp. 15-59 in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edited by D. Finkelhor. Beverly Hills, Ca: Sage.
- Putnam, F. 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269-278.
- Rush, F. (1980). *The Best Kept Secret*. New York, NY: Prentice Hall.
- Russell, D. E. H. (1984).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Sigel, J. A. & Williams, L. A. (2003).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 902-930.
- Terry, K. J. (2006). *Sexual Offenses and offenders*. California: Thomson Wadsworth.
- Tjaden, P. & Thoennes, N. (1998).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U. S. Department of Justice. Research in Brief. November, 16pp.
- Williams, L. M., Siegel, J. A & Pomeroy, J. J. (2000). Validity of Women's Self-Reports of Documented Child Sexual Abuse. pp. 211-226 in *The Science of Self-Report*, edited by Arthur A. Stone, Javlan S. Turkkan, Christine A. Bachrach, Jared B. Jobe, Howard S. Kurtzman, and Virginia S. Cai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yatt, G. E., Newcomb, M. D. & Riederle, M. H. (1993). *Sexual Abuse and Consensual Sex*. Newbury Park, CA: Sage.

1 차원고접수 : 2015. 10. 30.

심사통과접수 : 2015. 11. 20.

최종원고접수 : 2015. 11. 26.

Sexual offense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iRang Park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Hannam University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eongho Choi

Graduate School
Han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methods of operation, and offense characteristics. A total of 368 sexual offense cases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3 which had been found guilty were collected from 133 legal written decisions. We compared ninety-nine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269 cases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As a result, there were more male victims in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those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Most of offenders in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teenaged students with no criminal convictions. In addition, most of victims in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tudents of the school in which the offense occurred: they were alone in most of the cases at the time of the offense. In general the offender approached the victim by showing affection or giving compliments. The offense occurred in the restroom of the school, mostly in spring. In contrast, most offenders who committed sexual offenses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were employed: some of them were employees of the school. They tended to plan the offense in advance and approached the victim by using authority.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offenses were occurred in elementary school, especially in the playground. Based on the current finding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offense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practical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aids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Sexual offense against the disabled, sexual offense in school, methods of operation, offense characteristics, child sex abuse